관악구 옴부즈맨 고충민원 처리사례 [의견표명]

□ 민원 제목 : 거리가게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

□ 신청 취지

○ OOOO로 △△△ 앞 보도 끝 코너에 자리한 거리가게로 인해 차량 통행 시 좌측 방향 시야가 차단되어 우회전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거리가게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 요청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○ 거리가게는 불법 노점의 양성화를 위해 허가를 받고 운영 중으로 가스, 전기, 수도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전을 위해서는 대체 장소 마련과 운영자의 동의를 위한 이해설득 등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임.

- 종전에 동일 민원 제기가 있어, 거리가게 옆에 설치한 가스보관 시설을 이동 조치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노력함.

□ 사실관계

○ 차량 우회전 시 사고 위험성

-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(8차선)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대기 시, 간선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반드시 주시해야 함을 물론, 해당 간선도로는 평소에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한 교통상황임.
- 진입 대기 시 차량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거리가게가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차량 흐름 확인에 어려움이 따름.

○ 거리가게의 이전 가능성

- 거리가게는 관계 법령과 지자체의 정책에 의해 허가를 얻고 운영중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고정된 채로 설치되어 있어, 이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함.
- 거리가게는 불법 노점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운영자를 이해설득하여 설치된 점에서 이전의 경우에도 대체 장소 마련과 운영자의 이해설득을 우선해야 함.

□ 관계 법령 등

○ 도로법 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

○ 도로법 시행령 제69조(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)

○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

○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(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, 2018. 6. 28.)

□ 판단 및 결론

○ 판단사항 및 조치(의견표명)

- 거리가게로 인해 차량 흐름이 확인되지 않아, 사고 발생 우려가 존재하고, 거리가게와 인접해서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연쇄 추돌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- 교통 안전을 위해 거리가게의 이전이 최선의 대안이지만, 기간 소요 및 거리가게 운영자와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므로, 장기 과제로 두어 적정한 장소 이전을 강구해주기 바람.
- 최소한이라도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하여 우측 방면에 반사경 설치를 대체 방안으로 의견표명함.

○ 조치결과

- 거리가게 이전은 현실적 어려움(대체 부지 마련, 운영자 이해설득 등) 따른다는 점에서 옴부즈맨에서 의견표명한 대체 방안인 도로 반대편 반사경 설치에 대해 주관부서에서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 하였고 반사경의 우선 설치를 완료함.
- 거리가게는 최종적으로 이전 철거 조치하여, 민원 사항에 대해 해소 완료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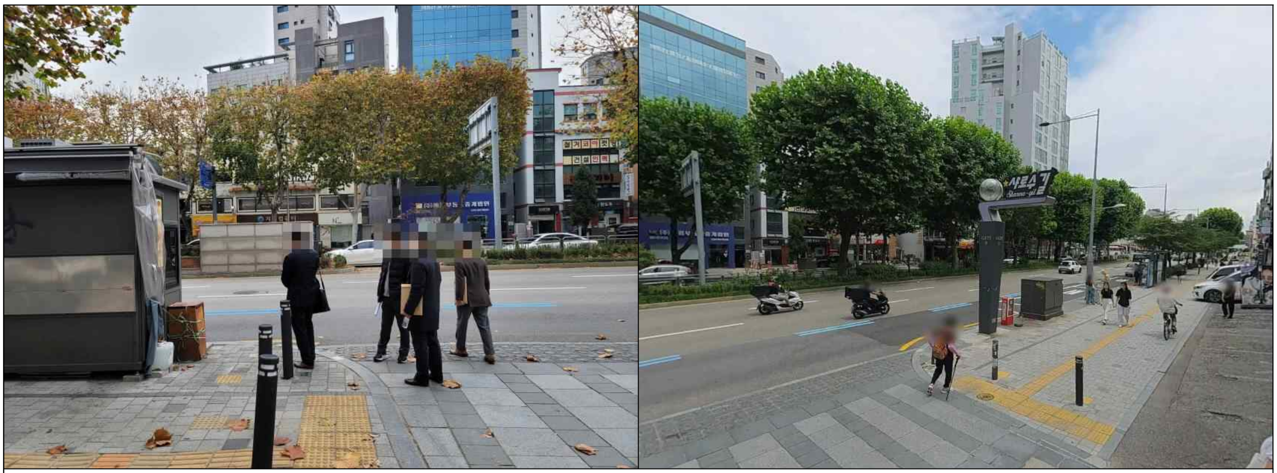

조치 전

조치 후

관악구 옴부즈맨 고충민원 처리사례 (의견표명)

□ 민원 제목 : 000길 이륜차 통행금지 요청

□ 신청 취지

○ OOO길은 주말, 공휴일 보행자전용거리로 운영되고 있으나, 배달 이륜차가 진입하여 난폭운행 및 인도주행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,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○ 배달 이륜차가 진입하는 길은 OO아파트와 OO중학교 사이에 난 샛길로 관악구와 동작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, 양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.

○ 이륜차의 단속은 경찰서 소관 사항이라,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, 이륜차의 운행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음.

□ 사실관계

○ OOO길 현황 및 이륜차 샛길 통행 특성

- OOO길은 2008년 보행전용거리로 지정됐으며, 폭 6m가량의 보도와 폭 2m가량의 일방통행 도로로 구성돼있고, 보행전용 운영시간은 주말, 공휴일로, 차량과 이륜차 통행이 금지됨.
- 샛길은 관악구와 동작구가 연결되는 폭 2m가량의 한쪽이 막힌 소로로 차량 운행은 불가하지만, 보행자 및 이륜차의 이용이 많고, 도로의 끝이 OOO길의 보도에 연결됨.

- 배달 이륜차가 해당 샛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, 우회 거리가 3km 이상 늘어나면서 지름길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임.

○ 이륜차 단속의 실효성

- 이륜차 단속 권한은 경찰 소관으로, 이륜차는 앞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CCTV에 의한 단속이 어려워, 경찰에서 인력으로 단속을 해야 함.

□ 관계 법령 등

○ 도로교통법 제13조(차마의 통행)

○ 도로교통법 제28조(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)

○ 도로교통법 제4조(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·관리기준 등)

○ 도로법 제2조 제2호(정의) 도로의 부속물

□ 판단 및 결론

○ 판단사항 및 조치(의견표명)

- OOO길에 배달 이륜차가 빈번하게 통행을 하고 보도 내 주행도 확인되며, 지름길로 이용하는 이상 배달 이륜차의 통행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지만, 해당 길이 주말·공휴일에는 보행자전용거리로 지정된 만큼 보행 안전을 위해 이륜차 통행 금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.
- 샛길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으나, 유모차, 휠체어 등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, 이를 고려한 이륜차 차단 장치 설치 방안과 동작구 및 경찰과 협조 하에 통행금지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, 위법 운행 단속 등 다각도로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.

○ 조치결과

- 샛길 입구에 유모차 및 휠체어 등 이동보조수단 통행은 가능하지만, 이륜차의 통행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부가적인 조치 없이도 이륜차의 통행을 차단시켜 민원 사항에 대해 해소 완료함.

조치 전

조치 후